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공고

소방청 소방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6일

소 방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10개 시도, 28명)

구분	계	조종			정비		운항관제		
		소계	남성	양성	소계	남성	소계	남성	양성
계	28	19	16	3	5	5	4	3	1
부산	1	1	1						
대구	3	3	3						
인천	1	1	1						
광주	3	1	1			2	2		
울산	4	3	3			1	1		
강원	1	1	1						
충북	3				3	3			
전남	5	3	3		2	2			
경북	3	3	3						
경남	4	3		3			1		1

-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로 전보(인사교류 등)가 제한될 수 있음
- 2)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 소방본부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및 119고시(<http://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장(신규채용)
-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업무 처리지침」

가. 공통요건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¹⁾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2.10.28.)
	운전면허 ²⁾	최초시험 예정일(서류전형일, 2022.10.4.)
경채	응시연령	2022년도 기준(다. 응시연령 참고)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서류전형일, 2022.10.4.)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2.10.28.)

1) 나.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3)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 결격사유 등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2) 복수국적자 임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임용 전 또는 교육기관 입교 전 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항공분야	소방위(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99.12.31. ~ 1976.1.1.
	소방장(정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12.31. ~ 1981.1.1.
	소방교(운항관제)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12.31. ~ 1981.1.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복무기간 연장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마. 자격증명 및 운전면허 요건

- 1) 항공정비, 운항관제 응시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2) 서류전형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3)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바.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조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운항관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관할구역 및 권역 내의 운항통제 및 운항정보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 비행금지구역 인가 등 특수지역비행 인가 • 헬기 이착륙장소, 연료보급 장소 등 헬기 지원정보 확인 및 제공 •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상황 조치 • 그 밖에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헬리콥터 조종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조종	소방위	19명

임용예정기관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구급이송, 화재진압 등 임무형태별 운항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항공통신 표준운영 절차 ○ 주요지역, 비행제한지역, 방공식별 구역 비행절차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조종 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후 2년 이상의 조종경력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1,000시간 이상인 사람(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항공안전법시행규칙」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르며,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⑥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헬리콥터 정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정비	소방장	5명

임용예정기관명
충북, 전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역량(기체계통,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연료 및 윤활계통) ○ 회전익 계통, 유압 및 조정 계통, 전기·전자·통신·계기 ○ 관리역량(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영어능력평가) ○ 임무역량(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 지식 정도, 역할 등)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정비 분야			
응시 자격 요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자격 및 경력</td> <td> <p>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td> </tr> </tbody> </table>	자격 및 경력	<p>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 및 경력	<p>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헬리콥터 운항관제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운항관제	소방교	4명

임용예정기관명
광주, 울산, 경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관할구역 및 권역 내의 운항통제 및 운항정보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 비행금지구역 인가 등 특수지역비행 인가 ○ 헬기 이착륙장소, 연료보급 장소 등 헬기 지원정보 확인 및 제공 ○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상황 조치 ○ 그 밖에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집행관리능력, 계획관리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에 계기출항, 접근절차 및 항공교통 관제 ○ 항로비행, 공중항법 등 비행 중 절차 ○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운항관제	
	자격 및 경력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공통>

- ① '응시자격요건(자격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②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 범위>

- ①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③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④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②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①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②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③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 ①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②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3

시험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22. 9. 6.(화)					
원서접수: '22. 9. 13.(화) ~ 9. 16.(금)					
1차	서류전형(신체검사)	-	-	10. 4.(화) 한	10. 6.(목)
2차	실기시험	조종	10. 6.(목)	10. 11.(화) ~ 10. 14.(금)	10. 19.(화) (조종사만 발표)
		정비		10. 24.(월) ~ 10. 28.(금)	
		운항관제			
인·적성검사(개별 안내)				10. 20.(목)	
3차	면접시험	조종	10. 20.(목)	10. 24.(월) ~ 10. 28.(금)	11. 18.(금) (최종 합격발표)
		정비			
		운항관제			

- 1) 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3) 실기·면접시험은 '22년 하반기 전문경력관(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2-150호)과 병행 시행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2. 9. 13.(화) ~ 9. 16.(금)

※ 응시지역은 단일 지역만 접수 가능하며, 2022년 하반기 전문경력관(항공분야) 채용 시험(공고 2022-150호)과 중복접수 불가함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2)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4)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시험절차마다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다. (응시수수료) 소방위(조종) 7천 원, 소방장·교(정비·운항관제) 5천 원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6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

1

1차 시험: 서류전형

가. 임용예정 직위별로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나.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제출서류
공통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 ③ 이력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⑨ 기본증명서 1부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⑪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⑫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⑬ 자격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조종사	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사본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 ④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 ⑤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 ⑥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 1부
정비사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 ②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부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운항관제사	①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경력증명 제출 시 포함될 서류

- ▶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사업주 포함)에 한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폐업회사의 근무경력자 포함)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회사 자체 서식 외 담당업무 기재 필요시 사용)
 - ②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③ 급여계좌내역(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무기간 기준), 갑근세증명서
 - ④ 근로계약서(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 ①, ②, ③번은 본인의 근무경력 기간 모두 나오도록 발급
 ※ ③, ④번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만 제출

다. 해산·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면 근무경력사실 확인서와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을 제출해야 함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for '민원증명' (Public Proof).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Tax 국세청홈택스'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like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세무대리/납세관리'. The '민원증명' section is active, showing a '사실증명신청' (Fact Confirmation) sub-section.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boxes: '민원증명' (Public Proof) with a '국세증명신청' (Income Statement Application) and '사실증명신청' (Fact Confirmation) link,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 and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To the right, there are two boxes: '민원증명 이용시간' (Service Hours) and '민원증명 이용절차' (Service Process). The '민원증명 이용절차' box shows a 4-step process: 01 홈택스 로그인,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and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The '민원증명신청' box lists various application types, with '소득금액증명' (Income Statement) highlighted in red and labeled with a blue '2'. Other application types include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상내사실증명)', '소득환급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전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 관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중)', and '취업후학자금상환_상환금납부사 실확인서'.

2 신체검사

가. (제출기한) 2022. 10. 7.(금)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 / 우 30127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다. (검사방법)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같음

라.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함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 약물검사(TBPE)는 3~4일 소요되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종합병원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은 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함
- ▶ 병원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급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을 것

마.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바.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사. 콘택트렌즈나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정하지 않음. 특히 청력·혈압·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함
- 자.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소방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정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차.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2차 시험: 실기시험

- 가. (시험방법) 조종사 - 모의비행, 정비사·운항관제 - 구술시험
- 나.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다.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 1) 조종사: 실기시험 →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2) 정비·운항관제사: 실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과락자는 면접시험은 무효 처리(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제3항)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① 이륙 상승 및 선회 ② 강하 및 선회 ③ 헬기장 접근 ④ 구조·구급 임무 ⑤ 화재진압 임무 ⑥ 자세회복 ⑦ 계기비행 전환 ⑧ 무선교신 절차 ⑨ CRM(승무원 자원관리) ⑩ 비상절차
정비사 (구술 10개 항목)	① 기체계통 ②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③ 연료 및 윤활계통 ④ 회전의 계통 ⑤ 유압 및 조종계통, ⑥ 전기·전자·통신·계기 ⑦ 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⑧ 영어능력평가 ⑨ 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관리 ⑩ 탑승정비사의 역할
운항관제 (구술 10개 항목)	① 운항계획 ② 항공정보 ③ 입출항 절차 ④ 비행 중 절차 ⑤ 운항 관리 ⑥ 항행안전시설 ⑦ 비정상 운항절차 ⑧ 회전의 운항 기술기준 ⑨ 항공 영어/항공기사고 수색구조 ⑩ 항공안전관리/항공안전법

- 라.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4 인 · 적성 검사

가. (검사일시) 2022. 10. 13.(금) 09:00~18:00

나. (검사안내) 세부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다.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검사 응시자는 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5 3차 시험: 면접시험

가. (면접위원) 3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2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나. (시험방법)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 방법	평정요소 (6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개별 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20	17	14	11	9	6	3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10점)	10	8.5	7	5.5	4	2.5	1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10	8.5	7	5.5	4	2.5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10	8.5	7	5.5	4	2.5	1
	창의력·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10	8.5	7	5.5	4	2.5	1

다.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 ⁰ , D)를 평정한 경우

5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채용분야	시험종류	적용비율	비고
항공분야	실기+면접시험	실기 75%+면접 25%	조종, 정비, 운항관제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합격증명서 발급

- 1) 발급방법: 합격자 발표 이후 희망자(수수료 없음)
-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army815@korea.kr / 044-205-7293)

7 시험위원 운영

가. 위원선정

- 1)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또는 실무에 정통한 사람으로 시험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사람으로 구성
- 2) 위원은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
- 3) 시험 단계별 외부 시험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

나. 위원구성 ※ 시험위원 명단은 비공개 처리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 위원: 총 2명 이상	· 위원: 총 2명 이상	· 위원: 총 2명 이상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 마.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1) 시험일정: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2) 서류제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9 ~ 90)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소방위		
<input type="checkbox"/> 정비사	<input type="checkbox"/> 소방장		
<input type="checkbox"/> 운항관제사	<input type="checkbox"/> 소방교		

구분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공통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기본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소득금액증명원		
	11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2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군 경력자에 한함) 1부		
조종사	1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2	경력(재직)증명서		
	3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4	계기비행자격증명서		
	5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증명서		
	6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월 이내 발행)		
	7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정비사	1	정비사 자격증명서		
	2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운항 관제사	1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2	경력(재직)증명서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2.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소방청 소방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소방청장 귀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정비사 <input type="checkbox"/> 운항관제		(한자)
생년월일	-	응시지역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보완요구 자료		※ 제출일자	
		※ 보완접수 자료	

.....

응 시 표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조종사(소방위)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소방장) <input type="checkbox"/> 운항관제(소방교)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지역):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지역)를 기재
 -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로 기재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소방교	5,000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7,000원

7.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기재

※ 조종, 정비, 운항관제로 기재

3. 응시자격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항공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

【경력】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만을 모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2.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전화번호: _____ - _____

입증인(2)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전화번호: _____ - _____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약물(TBPE)검사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상(음성)이면 정상으로 작성하시고, 이상소견(양성) 있을 시에는 불합격 사유 또는 판정보류 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조종 <input type="checkbox"/> 정비 <input type="checkbox"/> 운항관제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동의대상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3	자동차운전면허증	서류제출자 전원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서류제출자 전원
5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서류제출자 전원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휴 대 전 화	- -	응 시 번 호	
현 주소지			
격 리 기 간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 청 사유			

제출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 시 에 '√' 체크)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서식 11)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 12)
- ③ (확진자용) 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용) 자가격리 통지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도 시험용)

확진·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응시결격 사유, 복수 국적자의 임용 및 시험의 정지, 무효 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3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제5호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시간제(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 **전부를 인정**(이 규정에 따른 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참고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참고 4-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쫂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구 분	내 용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구 분	내 용
	<p>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p> <p>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p> <p>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p> <p>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p> <p>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11. 사지	<p>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p>
12. 귀	<p>가. <u>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u></p>
13. 눈	<p>가. <u>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u></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p>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p>

참고 4-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2022년 신체검사 지정병원: 57개소(2021년 지정병원 55개소 대비 2개소 증가)

연번	시·도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8	예약제
2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02-870-2039	예약제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6 -2355	예약제
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예약제
6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9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1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025	
13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4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23~4	
15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1544-9004 (내선번호 2)	
16	광주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17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18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19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한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전하동)	052-250-8349	
20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21		의료법인 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신정동)	052-259-5264	
22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23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24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25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26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27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연 번	시·도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031-900-6917	
29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047	
30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1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3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33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4	충북	청주성모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35	충남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094	
36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37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38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9		보령 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40		백제병원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6	
41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42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43	전남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44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164	
45	경북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46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47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48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49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50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23	
51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52	창원	창원경상대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검진센터	055-214-2050	
53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800	
54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57번길 8	055-225-1303	
55	제주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56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57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참고 4-3

2022년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 변경 현황

연번	시도	변경사항	병원명	
			제외	추가
1	서울	변경	제외	경찰병원
			추가	국립중앙의료원
2	부산	제외	동아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동의병원	
3	전라북도	제외	예수병원	
4	경기도	추가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5	충청남도	추가	백제병원	

※ 응시자는 변경된 지정병원 현황을 확인하여 신체검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4-4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종합병원 안내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길 82	031-787-2114
4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색각 관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에 명시한 종합병원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찰병원(국립)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체검사 지정병원 해제 요청에 따라 신체검사는 불가하나 색각경 검사(사전예약)는 가능합니다.

참고 5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요약)

□ 제1단계 면접(집단면접)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조별 순차적으로 면접대기실에 입실

나. 면접번호 부여, 면접번호 패용

다. 각 조별 면접시험장 동시 입실

라.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성명, 나이, 학력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없이 면접 시행(블라인드 면접)

마.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자료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3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10	8.5	7	5.5	4	2.5	1
②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10점)	10	8.5	7	5.5	4	2.5	1
③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10점)	10	8.5	7	5.5	4	2.5	1

□ 제2단계 면접(개별면접)

가. 면접위원에게 인성 또는 적성검사 결과 자료 배부

나. 응시자는 명찰(성명 및 수험번호)을 패용하고 입실

다.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성 또는 적성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응시자에게 질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평가

라. 공무원으로서의 적성, 품행 및 봉사정신 등의 평가 요소별 점수 부여

마.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2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20	17	14	11	9	6	3
②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10	8.5	7	5.5	4	2.5	1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